

수신자	동대문구청 도로과장
제목	제3종시설물의 해제통보
<p>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귀하께서 소유(관리)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종 시설물로 해제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하였음을 고시합니다.</p>	